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5 - 23호

『인천광역시 군구 예산지출내역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 인천광역시 군구 예산지출내역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 시에서 군·구로 집행되는 예산의 합리적 사용여부와 재정상황등에 대하여 파악과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시정활동에 중요한 정보로서의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코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군·구에 지출되는 예산내역의 파악을 가능하게하고 관련 시의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군·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의정활동을 더욱 원활히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책무에 인천광역시(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지출내역 중 군·구에 지출한 내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시의장”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안 제3조)
- 예산지출내역의 통보는 지출부서의 장이 행하며, 지출부서의 장은 군·구별 예산지출내역을 정리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지출내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안 제4조)
- 예산지출내역의 통보 주기는 월1회로 규정(안 제5조)
- 시장이 통보한 예산지출내역은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이 관리하며, 통보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군·구 관련 시의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안 제6조)
- 시의회는 통보받은 자료에 대하여 구체적 확인 및 세부사항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7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12, 팩스 032-440-87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제출자                           | 해당 조항 | 찬반여부 및 사유 | 비고 |
|-------------------------------|-------|-----------|----|
| ○ 주 소 :<br>○ 성 명 :<br>○ 연락처 : |       |           |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군구 예산지출내역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1부.

## 인천광역시 군·구 예산지출내역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군·구에 지출되는 예산내역의 파악을 가능하게 하고 관련 시의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군·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의정활동을 더욱 원활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이란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한다.
2. “예산지출내역”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출한 예산지출행위 일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지출내역 중 군·구에 지출한 내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회의장(이하 “시의장”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지출내역의 통보)** ① 예산지출내역의 통보는 지출부서의 장이 행한다.

② 지출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군·구별 예산지출내역을 정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출부서의 장은 예산지출내역 통보 후 지출내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통보주기)** 예산지출내역의 통보 주기는 월 1회로 한다.

**제6조(관리)** ① 시장이 통보한 예산지출내역은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이 관리한다.

②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은 통보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군·구 관련 시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요청)** 인천광역시의회는 통보받은 자료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 및 세부사항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검토 및 발체사항

|              |                                                                                                                                                  |
|--------------|--------------------------------------------------------------------------------------------------------------------------------------------------|
| 관련법령         |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제8조, 제22조, 제40조, 제41조<br><input type="checkbox"/>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5조<br><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
| 관련법규<br>정비대상 | “해 당 없 음”                                                                                                                                        |
| 관련자료         | “해 당 없 음”                                                                                                                                        |

# 관련법령 발췌사항

## □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40조(서류제출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 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5조(지방자치단체 규칙) 이 영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요인

- 예산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사안 없음

## 2. 미첨부 근거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 4. 작 성 자

- 유일용 의원